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9. 10. 30. |수| 14:00 ~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9. 10. 30. |수| 14:00 ~16:00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Contents

개회사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5
축사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9
	김광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13
발제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17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33
토론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9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53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57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61
	박명호	홍익대학교 교수	71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개회사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이종후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이춘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님, 김광림·장병완 국회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오늘 사회를 맡아주신 원윤희 교수님과 토론에 참석해주신 김정우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 박형수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님, 정문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및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인구고령화 및 투자둔화로 인해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재정 또한 최근 국세수입 증가율이 둔화되는 가운데 재정지출이 수입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경제 및 재정여건 하에서는 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조세의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하면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계개편을 목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소비 진작 및 투자활성화,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경기진작, 고용 지원,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기능 강화 등 정부안과 비교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다수의 의원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 심의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이춘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중 후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 1

이 춘 석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춘석입니다.

여러 의원님과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조세 정책 방향에 대한 지혜와 식견을 공유하기 위해 열리는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선 정성으로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국회예산정책처 이종후 처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재정연구포럼 대표 김광립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기꺼이 발제를 맡아 주신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님과 정문종 실장님, 그리고 사회를 맡아 주신 원윤희 교수님과 토론자로 함께 해 주신 김정우 의원님, 추경호 의원님, 채이배 의원님, 박형수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도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과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으로 인해 글로벌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증가하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성장률 둔화로 체감 내수경기에 활력을 잃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잠재 성장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향후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인 수입이 확보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 역시 커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세수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그렇기에 향후 안정적인 국가재정 운영을 위해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과 목표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번 토론회가 무척 반갑습니다.

금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경제활력 회복·혁신성장 지원’ 및 ‘경제·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 강화’, 그리고 ‘조세체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등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조세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대안을 담아 발의해 주신 다수의 세법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저는 기재위원장으로 오늘 토론회를 통해 취합된 다양한 제언과 고견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깊이 숙고하고 세법개정안 심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내 최고로 꼽히는 세법 전문가 여러분께서 한자리에 어렵게 모이신 만큼, 날카로운 통찰과 현실감각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국회기획재정위원장 **이 춘 석**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축사 2

김 광 립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축 사

안녕하십니까. 김광립 의원입니다.

장병완 의원님과 함께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회는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 개청과 함께 16년 동안 매년 개최되는 세법 관련 토론회중 언론과 전문가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명실상부 최고의 재정토론회입니다.

2016년 20대 국회 개원부터는 국회에서 가장 많은 의원님들의 공부모임인 경제 재정연구포럼과 공동주최 관례를 이어 오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토론회보다 금년에는 참으로 무거운 마음입니다.

1주일전 발표된 성장률 3/4분기 속보치가 전기비 0.4%에 그치면서 2차례 석유파동, IMF 외환위기와 같은 감당못할 외부 충격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경제성장률이 1% 대로 떨어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세법개정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IMF와 OECD와 같은 국제기구 또한 확장적 재정을 권고하며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계의 재정확대 방안에 대해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재정확대 여력이 높은 나라로 손꼽히는 독일과 네덜란드 모두 세출예산 보다 세법개정을 통한 조세지출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최고 33%에서 중소기업 적용분부터 25%로 낮추겠다고 합니다. 통일재원을 위해 도입한 연대세는 폐지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덜란드도 30억유로(4조원) 규모의 가계 감세를 발표했습니다.

기업과 가계의 세금부담을 낮추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는 방안도 엄연히 재정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 맬패스 총재도 언론(WSJ)과의 인터뷰에서 “선진국들이 정부 지출과 세제를 더 성장 친화적으로 바꾼다면 경제가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오늘 주제발표와 토론을 통해서도 소비를 끌어올리고 투자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조세지출 확대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결과는 포럼 소속된 의원님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해 의정활동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늘 실사구시적인 토론내용을 채워주시느라 수고해주고 계시는 예산정책처 이종후 처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활기가 넘치고, 우리 경제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의원들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경제재정연구포럼 공동대표 김 광 립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1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2019년 세법개정안

임재현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

“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



1

CONTENTS

1. 추진과정 및 기본방향
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2-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2-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2-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

1

추진과정 및 기본방향

- 조세 정책 여건
- 추진과정
- 기본방향

3

조세 정책 여건

조세부담률 ·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

연도	한국 (%)	OECD (%)
10	17.2	23.5
13	17.0	24.3
15	18.8	25.0
17	19.2	20.0
18	19.4	20.0
21	19.4	19.2
23	19.4	19.4

- '13년 이후 상승 → '18년 20.0% → '23년 19.4% 전망
- OECD 평균('17년, 25%)보다 낮은 수준

국민부담률 (%)

연도	한국 (%)	OECD (%)
10	22.4	32.3
13	23.1	33.4
15	25.4	34.2
17	26.8	26.8
18	26.9	26.8
21	27.4	26.9
23	27.4	27.4

-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 사회보장부담률

세목별 비중('18년 결산기준)

세목	조원	비중 (%)
총국세	293.6	100%
소득세	84.5	28.8%
법인세	70.9	24.1%
부가가치세	70.7	23.8%
관세	8.8	3.0%
개별소비세	10.5	3.6%
교통·에너지환경세	15.3	5.2%

- 3대 세목 비중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 [소득세] 완만한 상승추세
- ▶ [부가가치세] 비교적 안정적, 지방소비세 이양으로 소폭 하향
- ▶ [법인세] 16년 이후 비중 증가하여 '18년에 VAT 비중보다 높아짐

국세수입 실적 및 전망(조원)

연도	국세수입 (조원)
'14	205.5
'15	217.9
'16	242.6
'17	265.4
'18	268.1
'19	294.8
'20	292
'21	304.9
'22	320.5
'23	336.5

- '20년 국세수입 : 292조원 전망(예산안)

기획재정부 세제실 4

20 • NABO

추진과정

추진정책 뒷받침

경제정책방향('18.12월, '19.7월)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4월)
서비스산업 혁신전략(6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월) 등

외부수요 의견 수렴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및 학계
관계부처 등의 개정건의
재정개혁보고서('19.2월) 권고 과제
공청회, 관계실국간 토론회 개최 등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반영

일자리·투자 확대 및 혁신성장 촉진
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기획재정부 세제실 5

기본방향

비전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제개편		
기본 방향	경제활력 회복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
추진 전략	투자활력 제고 소비·수출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	일자리 지원 서민 지원 포용성 강화 공정경계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편의 제고 조세제도 합리화 세입기반 확충

기획재정부 세제실 6

2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경제 · 사회의 포용성 · 공정성 강화
-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7

2-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 투자활력 제고
- 소비·수출 활성화
- 혁신성장 지원

8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투자활력 제고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

- 생산성향상시설(자동화설비 등) 투자시 대기업 1% / 중견기업 3% / 중소기업 7% 세액공제
 → '20.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공제율 1년간('20.1.1.~'20.12.31.) 한시 상향

기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① 법 시행일 이후 1년간	2%	5%	10%
② ① 이후	1%	3%	7%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 일몰 2년 연장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기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송유·열수송관, LPG·위험물시설 등 사고위험 시설 추가**
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설비(기술유출방지시설) 제외

[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6개월 한시 확대('19.7.3.~'2.31.) 및 일몰연장('19년 말→'20.6월 말)]

- 내국인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가속상각**(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 확대
 * (대상자산) 대기업(혁신성장 투자자산 → **생산성향상·에너지절약시설** 추가), 중소·중견기업(사업용 고정자산)
 * (한도) 기준내용연수의 50% → **중소·중견기업 75%로 확대**

기획재정부 세제실 9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투자활력 제고

[기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 기업의 **사후관리기간 단축** 및 **업종·고용·자산 유지의무 완화**
 * 탈세·회계부정 등 불성실한 기업인 기업상속공제 배제 — **준법경영책임 강화**

구분	현행	개정
사후관리기간 단축	· 10년	· 7년
업종변경범위 확대	· 소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중분류 내 변경 허용 · 위원회 승인 하에 중분류 밖 변경도 허용
자산유지의무·완화 · 20%이상 처분 금지	· 수용·사업장 이전시 대체취득, 내용연수 경과자산 등 처분 예외 허용	· 불가피한 처분 예외 확대 · (예)업종변경에 수반되는 처분
고용유지의무 완화	· 매년 정규직근로자 80%이상 유지 · 사후관리기간 평균 정규직근로자 100%이상 유지 (중견기업은 120%)	· (좌 동) · 중견기업도 120%→100%
불성실기업인 기업상속 배제	· (신 설)	· 상속인·피상속인이 탈세 및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상속세 연부연납특례 대상 확대]

- 제도 **적용대상 확대**(중소기업 및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 → **모든 중견·중소기업**) 및 **요건 완화**
 * (피상속인) 10년 이상 최대주주·10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 → **5년 이상**으로 단축
 * (상속인)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 → **요건 삭제**

기획재정부 세제실 10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투자활력 제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

- 맥주·탁주에 대해 기존 증가세 → **종량세**로 과세체계 개편(세수중립적)
 - (서울) 탁주 1ℓ당 41.7원 / 맥주 1ℓ당 830.3원 (* 매년 물가(CPI)에 연동·조정)
 - 생맥주 서울 2년간 한시 경감(1ℓ당 644.2원)을 통해 개편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최소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 확대]

- 창업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제도 적용 업종**에 서비스업종 **대폭 확대**
 - (대상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등 682개 업종 →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등 **97개 서비스업종 추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 중여 금액 중 **5억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및 나머지 금액 **10% 세율로 과세**
- 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업종 범위 확대 및 창업·자금사용 의무기한 확대
 - (대상업종) 경영컨설팅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등 서비스업종 추가(창업중소기업 감면업종과 동일)
 - (의무기간) 1년 이내 창업 + 3년 이내 자금사용 → **2년 이내 창업 + 4년 이내 자금사용**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특례 확대]

- 중소기업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 및 분납기간 연장**
 - (요건) 10년(수도권 밖 이전)·3년(동일 산단 내 이전) 이상 운영한 공장 → **2년 이상 운영한 공장**
 - (분납기간) 2년 거치 2년 분할납부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양도세 **분납기간 연장**
 - (분납기간)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기획재정부 세제실 11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소비·수출 활성화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및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 확대]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3,000 → **\$5,000** (*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600) 포함 시 총 구매한도 \$5,600)
- (외국인관광객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 건당 30만원, 총구매액 100만원 → **건당 50만원, 총구매액 200만원**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및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1년 연장**(~'20.12월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대]

- 수출비중 30%(중견 50%) 이상 중소·중견기업이 일정요건 충족 시 수입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
 -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및 신청기한 연장**
 - (적용요건) 최근 2년간 국제·관세 체납 없음 것 →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체납세액 납부 시 적용대상 포함**
 - (신청기한)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 → **법인세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컨테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부담 규정 신설]

- (대상)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화물**을 별도 검사장소로 이동 후 **검사 시 검사비용**(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등)
- (예외) 검사 결과 **수출입법령 등 위반 시**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

기획재정부 세제실 12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혁신성장 지원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등 확대]

- 신성장·원천기술의 연구개발비를 일반연구비보다 우대하여 공제 적용(최대 40%)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대기업 5% / 중견기업 7% / 중소기업 10%)
 - ➔ **세액공제 대상 및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 * (대상기술) 혁신성장 관련 기술 추가
 - * (이월기간) 5년 ➔ 10년 확대
 - * (위탁연구비) 국내기관 위탁연구비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 ➔ **내국법인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외국연구기관에 대한 위탁연구비도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외부위탁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과학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된 분야(예: 콘텐츠 창작 등)**도 외부위탁 연구비에 대해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세제지원

[핵심 소재·부품·장비 R&D 비용 세액공제 및 시설투자 지원]

-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및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
 - * (R&D 법인세 공제율) 대·중견기업 20%+최대10%, 중소기업 30%+최대10%
 - * (시설투자 법인세 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혁신성장 지원

[내국법인의 소재기업 등 공동출자 시 세액공제 신설(3년간 한시적용)]

- 둘 이상의 수요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공동출자 시 출자금액의 5% 세액공제**
 - * (사후관리) 피출자법인이 일정기간까지 출자금액의 80%를 R&D비용 또는 설비투자에 사용하지 않거나, 내국법인이 5년 이내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또는 4년 이내 해당지분 처분 시 세액공제액 추정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신설(3년간 한시적용)]

- 국내 기술력, 산업기반이 미흡한 **품목 관련 해외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인수 시 인수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 (공제율)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인수금액 한도: 5,000억원)
 - * (사후관리) 일정기간 내 피인수기업의 지배주주가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가 되거나, 인수기업의 피인수기업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세액공제액 추정

[벤처캐피탈의 글로벌 전문기업 출자 시 비과세]

- 벤처캐피탈이 소·부·장 **글로벌 전문기업(GTS기업) 출자 시(중소기업 한정)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 (시행시기) GTS기업 개념, 범위 등에 대한 「소재부품기업법」 개정 이후 그와 연계하여 조특법 개정 추진

2-2.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일자리 지원
- 포용성 강화
- 공정경제·과세형평 제고

15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

일자리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19년 말 → '22년 말)]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 상생형 지역일자리(예: 광주형 일자리) 중·중견기업이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확대**
 * (공제율) 중견 1~2%, 중소 3% → 상생형 지역일자리 참여 시 **중견 5%, 중소 10%**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재고용 기업의 인건비 2년간 중소 30%·중견 15% 세액공제 및 재취업 여성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경력단절 **인정사유 확대** 및 경력단절기간·재취업대상 기업 **요건 완화**

	현행	개정
경력단절 인정사유	임신, 출산, 육아	'결혼, 자녀교육' 추가
경력단절 기간	퇴직 후 3~10년 이내	퇴직 후 3~ 15년 이내
재취업 요건	동일기업	동종업종

[중소기업 청년 등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 확대]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 감면** (* 청년은 5년간 90%)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서비스 업종**(예: 도서관·사적지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16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포용성 강화

[**점중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 상향(3만원 → 10만원)**]

* (점중구간) 총급여액 500만원 미만 단독가구 /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 허용 및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300~400만원 → **현행 +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금액 × 10%(300만원 한도)**
-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400만원 → 600만원)**
-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
* (현행) 퇴직소득세의 70% → (개정) 수령기간 10년 이하 시 70% / **10년 초과시 60%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1년말까지)**
* 연매출 4억원이하 개인음식점에 대해 우대공제율 적용(8/108 → 9/109) 및 모든 사업자 공제한도 5%p 우대
* 단, 과세유통장소 공제율 인하(4/104 → 2/102)
-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공제율 10/110) 적용기한 1년 연장('20년말까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6%p 상향(15% → 21%)**]

* ('18년 세법개정 11% → 15% 세수효과) △3.5조원 ('19년 세법개정안 15% → 21%) △5.1조원

기획재정부 세제실

17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공정경제·과세형평 제고

[**공익법인의 공익성 및 투명성 제고**]

- 지정기부금단체의 **추천 및 사후관리 검증**을 **국세청**으로 **일원화** 및 국세청-주무관청간 **정보공유 의무 신설**
* (국세청)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시 주무관청 통보 (주무관청) 설립허가 취소, 공익목적 위반사항 적발결과 등 국세청 통보
-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이원화**(지정기간 6년 → **신규지정 3년 + 재지정 6년**)
- 공시내용이 부실한 기부금단체에 대한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세부내역 요구권한 신설**
- 공익법인 **의무지출 및 의무공시·외부감사 제도 적용대상 확대**
-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회계 감리 제도 **도입**(6년 자유선임 + 3년 국세청 지정)

[**지주회사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 과세특례 조정**]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해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방식 변경**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4년 거치 3년 분할납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 과세특례 합리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축소**
* (현행)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도시지역 밖 10배) → **수도권 도시지역 주택정착면적의 3배(그 외 지역 현행과 동일)**
- **고가(9억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상가를 구분하여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획재정부 세제실

18

2-3.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 조세제도 합리화
- 세입기반 확충

19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

[세무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권 남용 여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영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입회 허용**
-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관련 위법부당행위를 한 조사공무원 교체 요구 권한 부여**

[조세심판·심사청구 결정절차 투명성 제고]

- 조세심판 및 심사청구 절차의 중요사항 결정기관을 **합의체 기구로 변경**

구분	현행	개정
조세심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상정 여부 * 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비상임심판관 6인이상	상임조세심판관회의* * 심판원장·상임심판관 전원
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결)	국세심사위원회* * 위원장(국세청 차장)·위원 10인

[기한 후 신고 시 납세자 부담 완화]

- 과세표준신고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제출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감액 신청) 및 수정신고(중액 신청) 허용**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을 세분화**
* (1개월 이내) 50% 감면 (1~6개월 이내) 20% 감면 → (1~3개월 이내) 30%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세제실
20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조세제도 합리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증여 시 할증평가 제도 개선]

- 할증을 하향조정, 지분율에 따른 차등 폐지,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 등 할증평가 합리화

현행			개정		
· 기업규모 및 지분율에 따라 차등 적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최대주주 지분율	일반기업	중소기업	구분	일반기업	중소기업
50%이하	20%	10%	할증률	20%	0%
50%초과	30%	15%			
· 중소기업은 '20년말까지 할증 배제(조특법)			· 중소기업 할증 배제 영구화(상증법에 반영)		

[국세청 통계자료 공개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 연구기관 등에 국내청 내 보안시설에서 기초자료(소득·법인·부가가치세 등 상세 신고내역 등) 제공
- 국세청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기관 범위(국가행정기관) 및 제공사유(과징금(183개 법)의 부과·징수 등) 확대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관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운행기록부 작성 없이 손금인정이 가능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기준 상향(연간 1,000만원 → 1,500만원)

[국제거래 자료제출 이행력 제고]

-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후 과세당국의 시정요구 불응 시 과태료 추가 부과 규정 신설(최대 2억원)
- 국제거래 자료 미제출 시 이전가격 추정과세 근거 신설
 - (방법)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유사한 법인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상가격 추정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세입기반 확충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 근로소득에서 일정률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에 2,000만원 한도 신설

총급여	500만원 이하	500~1,500만원	1,500~4,500만원	4,500~1억원	1억원 초과
공제율	70%	40%	15%	5%	2%

[임원 퇴직소득 한도 축소를 통한 과세 강화]

-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 시 적용되는 지급배수 하향(3배 → 2배)
 - (한도)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 × 1/10 × '12년 이후 근속연수 × 2(지급배수)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체계 개선]

-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특허권과 별개의 '유사한 재산·권리'에 대한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침해에 따른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국내에서 과세권 확보

[사실과 다른(거짓) 계산서 가산세 대상 확대]


- 복식부기의무자(업종별 수입금액 7.5천만~3억원 이상) →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 및 비사업자도 포함

3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23

세수효과



세수효과 산정방법

- ▶ (순액법) 직전연도 대비 증감 계산
: 연도별 세수변화 파악
- ▶ (누적법) 기준연도('19년) 대비 증감 계산
: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누적총량 파악

☑ 금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 향후 5년간 순액법 약 + 40억원('20년 △ 1,400억원)
누적법 약 △ 4,700억원**

※ 지방소비세를 조정으로 인한 국세의 지방세 이전(연간 △5.1조원) 미포함

- **증가 요인** : 근로소득공제 정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 360억원) 등
- **감소 요인**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5,320억원, 1년 한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440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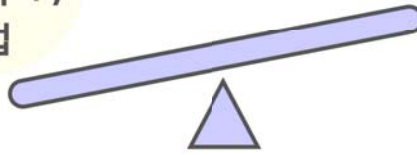
기획재정부 세제실 24

세부담 귀착



1,400억↑
고소득자 /
대기업

서민·중산층 /
중소기업
1,000억↓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의 부담은 감소하고(△1,000억원),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부담은 증가(+1,400억원)

감사합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발제 2

정 문 종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정문중

추계세제분석실장



국회예산정책처

Contents

- I. 중기 경제·재정여건
- II. 2020년도 세입전망·세입여건
- III.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 IV.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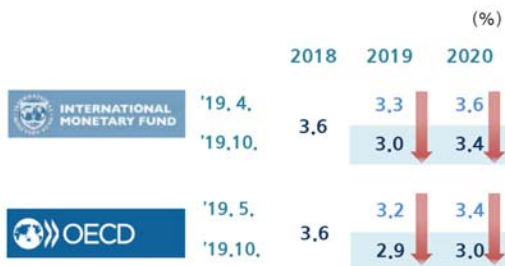
I

중기 경제 · 재정 여건

I-1. 경제여건

세계경제는 교역 위축, 무역갈등 심화 등 성장경로 불확실성 증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또한 추세적 하락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s(2019.10.)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2019.10.)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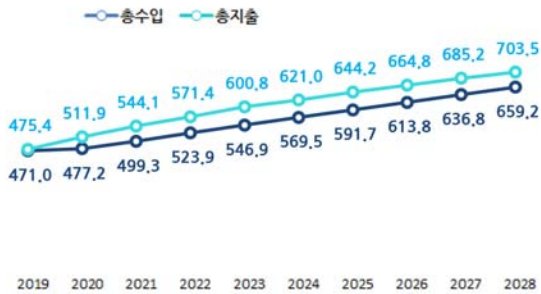
주: 2019년 이후 점선은 NABO 전망치
자료: NABO, 「2020년 및 중기경제전망」

I-2. 재정여건

총지출이 총수입 보다 빠르게 증가, 국세수입 증가율은 둔화

- 총지출 증가율: ('14~'18년) 5.7% ⇒ ('19~'28년) 4.5%
- 총수입 증가율: ('14~'18년) 6.9% ⇒ ('19~'28년) 3.8%
- 국세수입 증가율: ('14~'18년) 9.3% ⇒ ('19~'28년) 3.5%

총수입·총지출 전망('19~'28년) (조원)



국세수입 전망('19~'23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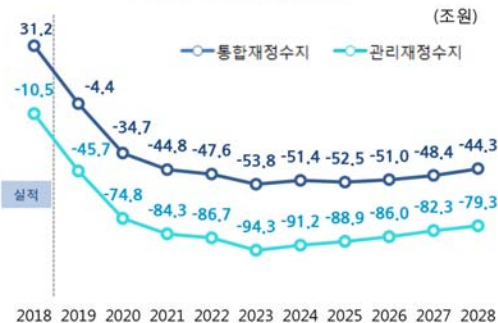
자료 : NABO,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I-2. 재정여건

NABO 전망 결과 재정수지 악화, 국가채무 확대

- 통합재정수지는 2019년 적자 전환, 관리재정수지 적자 또한 심화될 전망
-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년) 38.0% ⇒ ('28년) 56.7% 증가할 전망

재정수지 전망(NABO) (조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추이(NABO)



주 :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관리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자료 : NABO,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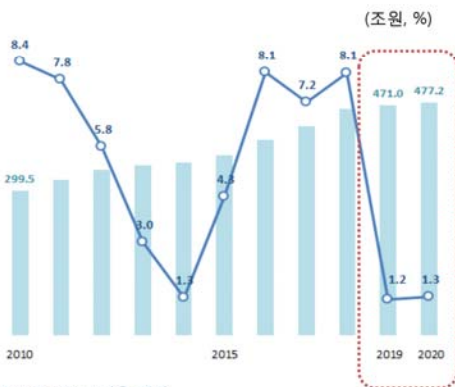
II

2020년도 세입전망·세입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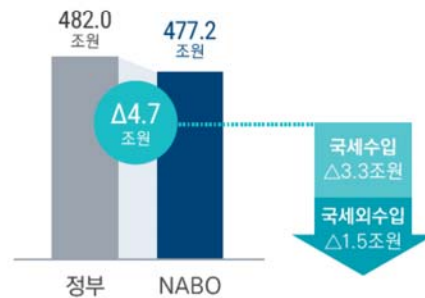
II-1. 2020년도 세입전망: 총수입

NABO 전망 2020년 총수입은 477.2조원
 정부 세입예산안(482.0조원) 대비 4.7조원 하회

2019~2020년 총수입 전망(NABO)



2020년 총수입 전망 비교



주: 2019~2020년은 전망
 자료: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II-1. 2020년도 세입전망: 국세수입

**NABO 전망 2020년 국세수입은 288.8조원
정부 세입예산안(292.0조원) 대비 3.3조원 하회**

국세수입 추이 및 전망(NABO)



주: 2019~2020은 NABO 전망
자료: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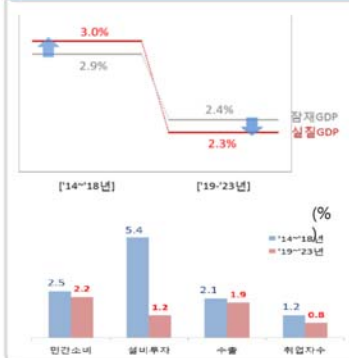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7

II-2. 세입여건

경제의 성장세 하락에 따른 세입여건 악화

경제성장 동력 약화
(인구고령화·투자 둔화)



자료: NABO, 「2020년 및 중기경제전망」, 「2019~2028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국세수입 증가세 둔화
(세입기반 약화, 부가가치세 이양)



경기침체기 재원조달 기능 취약
(국세수입 변동폭 확대)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8

[참고] 저성장기 주요국 조세정책 변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12~'18년)

성장률: 3.2%→2.3%, 국가채무비율: 55.8%→72.9%

국가별 경제·재정여건에 따라
조세정책 변화(세율인상/인하) 진행



자료: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버블붕괴 이후 일본('91~'09년)

성장률: 4.4%→1.3%, 국가채무비율: 63.5%→201.9%

'80~'90년대 감세정책 → '91~'09년 세수감소
'07년 이후 세율인상 → 세수증가



III

2019년 세법개정안 분석

III-1. 2019년 세법개정안: 특징(정부)

정부 세법개정안은 투자활성화 및 소비진작에 중점을 둔 세수감소형 개편

↳ 2019년 정부제출 세법개정안 17건(2019.10.기준)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및 혁신성장, 소비진작 지원

-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1년 한시 상향(대·중견·중소 1/3/7% → 2/5/10%)
- ↳ 특정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6개월 연장
-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 ↳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서민·중산층 지원 지속, 재정분권 추진

- ↳ 근로장려세제(EITC) 최소지급액 상향(3만원 → 10만원)
-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6%p 인상(15% → 21%)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1

III-1. 2019년 세법개정안: 특징(국회)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은 투자 및 고용지원, 소비진작에 중점 정부안 대비 지원의 폭과 강도는 보다 적극적인 수준 요구

↳ 국회의원 발의 세법개정안 662건(2019.10.기준)

정부안 대비 지원 확대안

- ↳ 생산성향상 및 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김정우·심재철·추경호의원안)
- ↳ 가속상각특례 적용기한 확대(김상훈의원안)
-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일몰연장(김두관·오제세·추경호의원안)
- ↳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폐지(김경협·김선동의원안)
-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김두관·김영춘·오제세·추경호의원안)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은 개편안

- ↳ 법인세 과세표준 조정 및 세율인하(송언석·추경호·윤영석·강효상·정갑윤의원안)
- ↳ 일반적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송언석의원안)
- ↳ 무주택 자영업자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적용 확대(채이배의원안)
- ↳ 증권거래세 폐지(조경태·최운열·추경호의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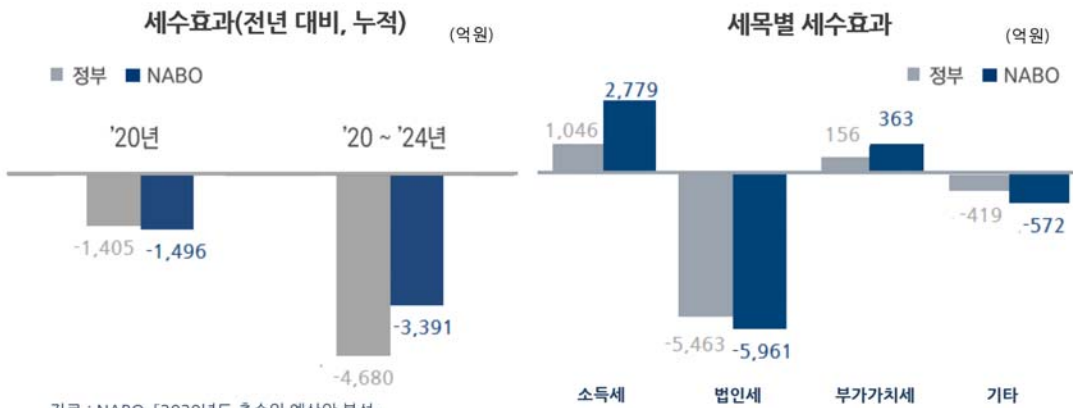
nabO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12

III-2. 2019년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NABO는 향후 5년('20~'24년) 총 3,391억원 세수감소 전망
 정부 세수효과(총 4,680억원) 대비 1,289억원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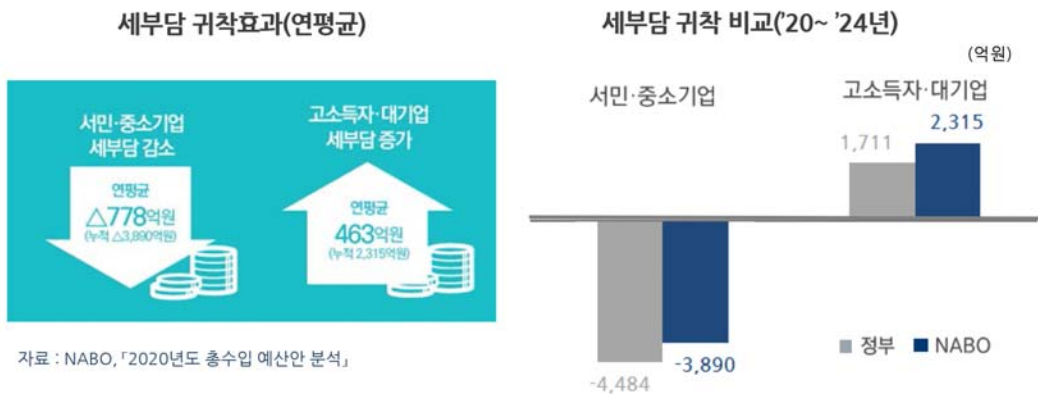
2019년 정부안 세수효과 분석



III-2. 2019년 세법개정안: 세부담 귀착

NABO는 서민·중소기업 세부담은 연평균 778억원 감소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은 연평균 463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정부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귀착효과(NABO)



III-3. 세목별 분석: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한도(2천만원) 신설

⇒ 전체 근로소득자의 0.11% 대상, 세입기반 확충 효과는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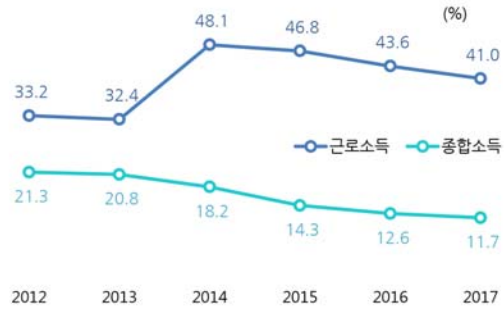
- (세수효과) 2020~2024년 누적 NABO 3,772억원(정부 3,210억원) 세수증가 전망
- (적용대상) 총 급여 3억 6,250만원 초과자(전체 근로소득자의 0.11%)

1인당 세부담 변화

총급여	1인당 세부담 (백만원)		
	공제액	공제한도 초과분	1인당 세부담
3.625~5억원	20.23	0.23	0.07
5~10억원	26.14	6.14	2.08
10억원 초과	58.90	38.90	14.14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면세자 비율 추이



III-3. 세목별 분석: 소득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3년 연장, 추가 공제(제로페이 40%) 신설

⇒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는 가시화, 추가 공제 신설에 따른 복잡성 증가

종합소득신고자 과세표준 양성화 추이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추가공제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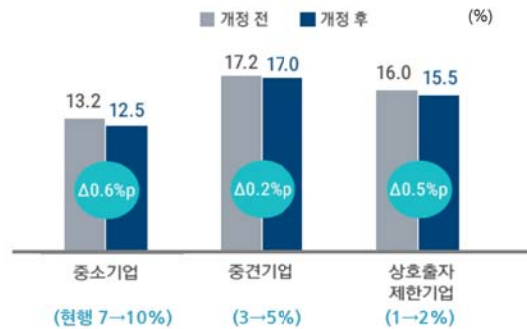
시행시기	정책목표 추가	추가공제 신설
1999 도입	과세표준양성화	신용카드 사용액 10%
2012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사용액 30%
2013	대중교통 이용유도	대중교통 사용액 30%
2018	문화생활 지원	도서·공연 사용액 30%
2019	문화생활 지원	박물관·미술관 사용액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2019개정안	소상공인 부담완화	제로페이 사용액 40% (전통시장 사용해도 공유)

III-3. 세목별 분석: 법인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2020년 한시 상향 및 일몰 2년 연장

- ⇒ 공제율 상향은 수혜기업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을 0.2~0.6%p 감소
- ⇒ 중소기업의 투자여력 감안시 공제율 상향 + 자금지원 수반 필요

공제율 한시 상향 효과
(법인세 평균 유효세율 감소)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III-3. 세목별 분석: 법인세

특정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특례 일몰기한 6개월(~2020.6.30) 연장

⇒ 투자의욕 고취 측면에서 가속상각과 세액공제간 연계 강화 바람직

- ※ 생산성향상시설 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년 한시 상향된 반면, 동 시설 투자에 대한 대기업 가속상각특례는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

자산취득 가속상각제도 변화

자산취득 기간	'18.7.1.~'19.7.2.	'19.7.3.~'19.12.31. (한시확대)	'20.1.1.~'20.6.30. (일몰종료)
중소·중견기업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50%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75%	일반사업용자산 내용연수 ±50%
대기업 (혁신성장투자 자산)	R&D설비,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 내용연수 ±50%	R&D설비,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내용연수 ±50%	R&D설비, 신성장 기술사업화시설 (삭제) (삭제) 내용연수 ±50%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설비투자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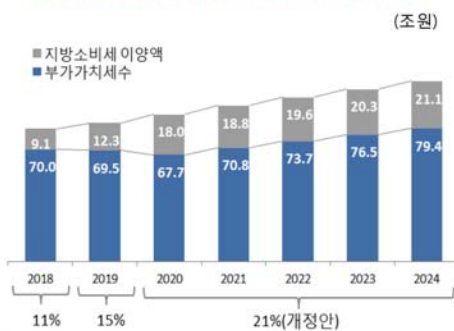
III-3. 세목별 분석: 소비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6%p 인상('19년 15% → '20년 21%)

⇒ 2020~2024년 부가가치세 27.8조원(연평균 5.6조원) 이양

⇒ 국세 중 부가가치세수 비중 축소: 24.6% → 23.3%(Δ1.3%p)

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이양액) 추이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국세 중 부가가치세수 비중 변화



III-3. 세목별 분석: 소비세

친환경차 시장기반 확대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시 감면 확대

⇒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 한시 감면 연장('20년 1월~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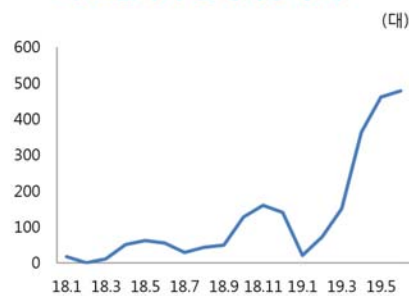
⇒ 수소전기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 3년 연장(~'22년)

개별소비세 감면확대 세수효과(NABO)



주 : 감면액 추정치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합산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수소전기차 판매대수 추이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III-4. 조세지출 현황

조세지출 규모는 2019년 50.1조원, 전년 대비 6.1조원 증가할 전망

⇒ 국세감면율은 2019~2020년 2년 연속 법정한도 초과 전망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추이



주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 x 100
 자료 :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III-4. 조세지출 정비

조세지출 정비 결과 2020년 세수는 1,262억원 감소할 전망

⇒ 세수감소는 조세지출 신설 및 확대, 일몰연장에 기인

※ 올해 조세지출 신설 및 확대 37건, 단순일몰 연장 16건(전체 정비 항목의 68.8%)

조세지출 정비 규모 추이(NABO)



주: 2015년은 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 상 정비효과임
 자료 : NABO,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NABO, 「2020년도 총수입 예산안 분석」



IV

향후 과제

IV. 향후 과제

중장기 세입기반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대비 필요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세입기반 강화 방안 모색

- └ 세입전망시 인구 및 산업구조 변화 등 향후 세입여건 위축요인 점검
- └ 중장기 조세정책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반영 등 세입기반의 제도적 관리 강화
- └ 디지털 경제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세원 발굴 등 과세기반 확보 노력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 └ 사회복지, 고용·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조세지출 분야와 재정지출간 연계 강화
- └ 비과세·감면 정비 강화를 통한 국세감면을 법정한도 준수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감사합니다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1

김 정 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2

추 경 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3

채 이 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4

박형수

前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평가 1 : 세입확충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 세법개정안

□ 국가재정 자원조달이라는 조세의 본래 역할에 충실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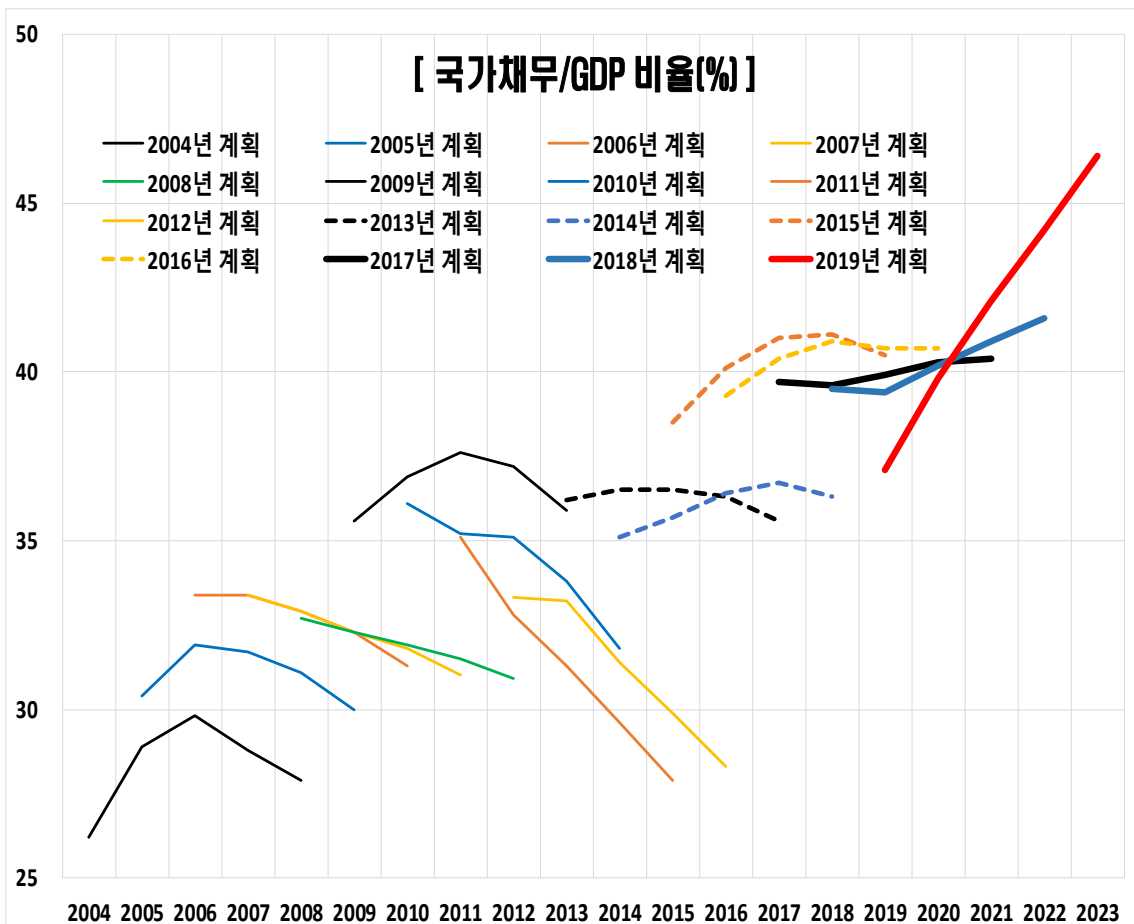
- 조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국가의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것
 - 재정학·조세론 교과서는 ‘조세’란 “정부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특정한 개별적 보상을 급부하지 않고 민간부문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또는 재화”로 정의
 - 그 다음이 공공재 공급 등 자원배분, 소득재분배, 경제안정 기능
- 최근 3~4년 호조를 보이던 국세수입이 2019년부터 증가세 크게 둔화
- 내년 총지출이 금년 본예산보다 44조원 증가하는데 총수입 증가는 6조원
 - 이에 따라 내년도 관리재정수지가 72조원, GDP대비 3.6% 적자를 보이고 국가채무도 65조원이나 증가하게 됨
 - 관리재정수지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재정적자가 GDP대비 3%를 초과했던 연도는 외환위기 직후 2개년, 글로벌금융위기 직후 1년 등 모두 3개년뿐
-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총지출은 338조원 증가하는 반면, 총수입 증가는 166조원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
 - 2004년 이후 모두 16차례 작성된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에서 이번 중기재정계획이 조세의 자원조달 기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적어도 2023년까지 4년 연속으로 재정적자가 GDP대비 3%를 초과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전망

□ 증세와 국채발행의 적절한 조합을 모색하고 중장기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 조세부담률: '19년 19.6% → '23년 19.4% 전망 vs '17년 OECD 평균 25.0%
- 국가채무비율: 37.2% 46.4% 83.5%
- 세법개정안 5년간 세수(누적법): '17년 +23.6 → '18년 ▲8.9 → '19년 ▲0.5조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추이

	총지출 누적증가 (A, 조원)	총수입 누적증가 (B, 조원)	지출 초과 (A-B, 조원)	재정수지/ GDP 누적 (%)	국가채무/ GDP 증가 (%p)
2004~2008년 계획	129.0	164.8	▲35.8	▲2.8	+1.7
2005~2009년 계획	137.3	165.5	▲28.2	▲5.8	▲0.4
2006~2010년 계획	152.8	178.5	▲25.7	▲6.2	▲2.1
2007~2011년 계획	181.1	209.1	▲28.0	▲5.2	▲2.4
2008~2012년 계획	171.3	218.7	▲47.4	▲3.5	▲1.8
2009~2013년 계획	48.5	177.4	▲128.9	▲12.0	0.3
2010~2014년 계획	153.9	250.3	▲96.4	▲6.0	▲4.3
2011~2015년 계획	162.2	273.3	▲111.1	▲2.5	▲7.2
2012~2016년 계획	161.2	249.5	▲88.3	▲0.7	▲5.0
2013~2017년 계획	115.0	171.1	▲56.1	▲6.0	▲0.6
2014~2018년 계획	178.8	189.0	▲10.2	▲7.9	+1.2
2015~2019년 계획	66.8	160.7	▲93.9	▲8.7	+2.0
2016~2020년 계획	92.0	179.2	▲87.2	▲7.7	+1.4
2017~2021년 계획	219.5	231.6	▲12.1	▲9.2	+0.7
2018~2022년 계획	347.8	267.8	+80.0	▲11.2	+2.1
2019~2023년 계획	338.0	165.7	+172.3	▲17.5	+9.3



평가 2 : 세제개편안이 아닌 자원배분 및 조세지출예산안에 그쳐

□ 부가가치세의 지방배분 및 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로 국세수입 감소

-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세수의 추가 지방세 이전으로 국세수입이 연간 5.1조원 감소
 -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무지출 감소분 약 2조원을 감안할 경우 중앙정부 재원은 매년 약 3조원 추가 감소
 - 서울: '10~'13년 5% → '14~'18년 11% → '19년 15% → '20년 이후 21%
 - 5년간 세수효과(누적법): '18년 ▲17.8 → '19년 ▲27.9조원

- 이외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모두 조세지출 확대에 의한 국세수입 감소
 - 일부 증세 항목도 조세지출의 축소

- 2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 초과(지방소비세율 인상효과 제외시 한도 이내)
 - 국세감면율: '18년 13.0% → '19년 14.5% → '20년 15.1%
(법정한도) (14.0%) (13.6%) (14.0%)
 - 조세지출 정비율이 38.2%(행정부 추계)로 전년(14.9%)에 비해 높아졌지만, 금년 조세지출 정비에 따른 세수효과(NABO 추계)는 2020년 ▲1,262억원
 -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 공제율·감면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한 항목이 지속적으로 연장될 경우 2020~2024년 합계 4.3조원의 세수 감소 전망

2019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항목

정책 수단	증세 항목	감세 항목
세율 조정 등	-	•지방소비세율 인상 ▲5.1조원
조세지출 조정	•근로소득공제 정비 +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360억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1년 한시)▲5,32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 ▲440억원

□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외하고 가장 큰 세수 감소를 초래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는 심층평가에서 축소를 권고했던 제도

- 동 제도는 2020년 감면액이 1.2조원 규모로 16번째로 큰 조세지출 항목
- 조세재정연구원의 2017년 심층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조건부 일몰연장을 권고
 - 동 제도가 기업투자를 증대시키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실증분석에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발견
 - 그러나 정책이 목표로 하는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실증분석에서 잘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 다른 세액공제에 비해 소수의 제조업 대기업에 수혜가 집중되며, 최근 이러한 형평성 문제가 더 심각해 지고 있음
- 제안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았음
 - 다른 주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와 유사하게 중소/중견/일반 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7%/5%/3%에서 6%/3%/1% 또는 6%/3%/0%로 인하
 - 개별 기업별로 세액공제 한도를 설정하여 소수 기업의 수혜 집중을 완화
 - 세액공제 대상 장비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생산성향상시설을 일일이 세법에 열거하는 방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
-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 정부세법개정을 통해 7%/3%/1%로 인하
- 2019년 심층평가에서도 조건부 일몰연장을 건의하며 동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항목을 세분류가 아닌 중분류 수준까지만 규정하도록 제안
 - 또 동 제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동 제도와 기타 제도의 혜택수준을 조정할 필요
- 그러나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비록 1년간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2차례의 심층평가 결과와는 반대로 공제율을 10%/5%/2%로 확대
 - 공제대상에 의약품 제조 첨단설비 및 물류산업 첨단설비 추가

□ 조세지출 규모가 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심층평가에서 축소나 폐지가 권고되었음에도 공제를 조정없이 적용기한만 3년 연장

- 동 제도는 2020년 감면액이 2.3조원 규모로 6번째로 큰 조세지출 항목
- 조세재정연구원의 2018년 심층평가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 모색을 권고
 -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보편화되어 자영업자의 소득과약률이 2016년 기준 88%로 근로소득자(95%)와의 차이가 많이 감소하여 사실상 한계에 도달
 - * 2010년 기준 62% vs 85%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액의 11.2%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7%에 불과한 총급여 1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집중되는 형평성 문제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근로소득자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동 제도의 개편방안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상위 3개 항목은 다음과 같았음
 - 제도의 단순화: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추가공제조항 폐지
 - 소득계층 간 과세형평성 제고: 고소득층 공제한도 축소 및 세액공제로의 전환을 통해 고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축소
 - 지불수단 간 공제율 격차 확대: ①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및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② 직불카드 공제율 유지,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및 공제율 격차 확대, ③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
- 그러나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공제율 등의 변경없이 적용기한만 3년 연장
 - 또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40% 공제율을 적용하고,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 포함

□ 국세청 통계자료 및 과세정보 공유 확대,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확대, 기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준 완화 등은 평가할 만함

- 고용창출에 대한 세제지원은 보다 면밀한 정책효과 분석이 필요

대안 제시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

- 범정부적인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재추진
 - 2016~2017년 「재정건전화법」 제정을 통해 재정적자(3%)·국가채무(45%) 한도 설정 등 추진했었음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혁을 추진하도록 함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공공기금으로 전환시켜 국가재정에 포함시켜야

- PAYGO 원칙을 법제화하여 엄격하게 집행할 필요
 - 미국사례 : 재정적자 억제를 위해 1990~2002년 시행 및 2010년 재도입
 - 재정지출 증가/감세 초래 법안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법안(다른 부분의 지출 삭감 또는 증세)을 의무화
 - 현재도 법안 발의시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이라는 국제적인 조세정책의 큰 흐름에 따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 마련

- 국회예산정책처 제안처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장기 세입확대 실행계획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거나, 김성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처럼 2013년 도입되었지만 이미 유명무실화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내실화할 필요

- 증세 대상을 현재보다 확대할 필요
 - 지난 10년간 조세지출 축소, 세율인상 등이 고소득층, 대기업, 자산가에 집중되었으나, 이는 증세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경제왜곡, 조세회피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이 크고 지속적인 증세를 어렵게 함
 - (중전) 고소득층, 대기업, 자산가에 대한 조세지출 축소 → 세율인상
(향후) 중산층, 중견기업을 포함해 조세지출 축소 → 세율인상

- 연평균 0.2%p를 크게 초과하지 않는 등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증세 추진
 - 1972~2016년 기간 중 조세부담률 증가 규모는 연평균 0.16%p
 - 국민의 정부 0.23%p, 참여정부 0.37%p, MB정부 ▲0.20%p, 박근혜정부 0.18%p, 문재인정부 2년 0.90%p

- 증세가 경제활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OECD국가에 비해 세수비중이 현저하게 낮은 소득세와 소비관련 조세부담을 주로 늘리되,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부담은 다소 인하할 필요
 - 소득세: 지속가능한 증세를 위해 증세대상을 현재보다 넓힐 필요(예: 중산층 이상 대상의 근로소득공제 등 조세감면 축소를 추진해 세수증대, 소득세의 누진구조 강화, 면세자 축소의 3가지 정책목적을 동시에 달성)
 - * 2011년 이후 1억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실효세율은 하락한 반면, 1억원 초과(상위 2.5%)는 2~4%p 상승
 - * 종합소득자도 과표 8천만원 이하는 실효세율이 하락했으나 2~5억원은 2%p, 5억원 초과는 4%p 상승
 - 법인세: 기업규모에 따른 법인세 부담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과표구간 수 축소, 대기업에 대한 세율 인하 및 조세지원 강화
 - * 2009년 이후 조세감면 축소, 최고세율 인상으로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기업의 실효세율은 하락한 반면 500억원 초과 기업은 1~2%p 상승
 - 소비세: 환경, 술, 담배, 도박, 유흥 등 유해행위에 대한 세부담을 강화해 나가면서, 세수비중, 세율 등이 OECD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은 중장기적으로 검토
 - 상속·증여세: 부의 대물림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 가업승계, 사전증여 등 일자리 창출 및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감세 추진
 - 부동산 관련 세금: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인하하되 일부 계층의 세부담이 단기간에 급등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완만한 증세정책 추진

- 국세감면이 법정한도를 초과할 정도로 남발되지 않도록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
 - 특히 국회예산정책처 제안처럼 복지, 고용, 투자 등 최근 확대되는 조세지출 분야와 재정지출을 연계하여 관리할 필요

□ **보다 강력한 지출구조조정과 지출효율성 제고로 가능한 국민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고 국가재정을 운용**

- 이제까지와 달리 보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전략적 지출검토(strategic spending review) 제도를 도입할 필요
 - 특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각종 유사·중복 예산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보다 과감하게 기존 예산사업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 복지 이외 재정규모는 OECD국가 평균 수준이므로 결국 복지지출의 증가속도 제어만이 조세부담의 지나친 증가를 막는 유일한 길이므로 복지정책의 가성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
 - 본인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조세와 복지를 통한 지니계수 개선효과가 작은 것은 소득세와 복지지출 규모가 작은 것 이외에 정책수단의 구성과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뒤처지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 *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 분석"(예산정책연구 2019년 5월)
"소득재분배 정책효과의 비교분석: 정책수단 및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2019년 8월)

- 이와 같은 재정총량에 대한 관리 이외에 최근 재정지출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개별 예산사업에 대한 관리가 느슨해졌기 때문에 개별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검토, 예산심사, 사업관리, 사후평가 등 지출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회계연도 지출결산 분석에서 정책목표와 상반되게 예산이 지출되거나 사업이 중복된 사례, 성과가 매우 미흡한 사례, 표면적 집행실적과 달리 실집행이 미진한 사례 등이 다수 발견

- 복지지출의 확대, 경기부양 등 재정확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규율있는 확대가 아니면 재정확대의 성과가 담보되지 않음
 - 최근 국가재정이 악화될 정도로 재정투입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경제성장, 국민 삶의 질, 사회통합 등 재정정책의 성과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9년 세법개정안 토론회

토론 5

박 명 호

홍익대학교 교수

오늘의 제 토론에서는 세법개정 여건, 기본방향, 세법개정 상세내용이라는 2019년 세법개정안의 목차에 맞추어서 제 의견을 밝히고자 합니다.

조세정책의 환경을 나타내는 세법개정 여건은 경제여건과 재정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우선, 경제여건을 보면, 세법개정안을 만들 때 우려했던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 확대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4사분기에 경제가 전기대비 0.97%를 성장해야 겨우 2%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통계가 공표되는 1953년 이후의 역사를 볼 때, 경제성장률이 1%대 이하를 기록한 적은 대내외적 경제적 충격이 왔던 1956년(0.7%), 1980년(-1.7%), 1998년(-5.5%), 2009년(0.8%) 등 네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¹⁾ 이러한 사실은 올해의 거시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며, 내년 경제성장률도 정부가 목표한 2.6%를 하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

재정여건은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로 재정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여, 2019년 8월까지의 관리재정수지 누적적자가 49.5조원에 달한다.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이후 적자가 GDP 대비 3%보다 큰 해는 경제위기를 경험했던 1998년(4.7%)과 2009년(3.8%) 두 차례뿐이다. 그러나 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치가 2020년 3.6%, 2021~2023년 3.9%로 3%대의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상시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행 재정기조가 유지될 때,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빠르게 악화될 것임을 강하게 나타낸다.

이상과 같이 조세정책을 둘러싼 환경을 거시경제 여건과 재정여건을 통해 살펴본바, 조세정책의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음을 알 수 있다. 경기 상황을 볼 때는 과감한 감세조치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낙관적 경제전망 아래서조차 재정건전성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고, 과세기반도 경상성장률 하락 기조로 크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 노력도 요구된다. 2020년에 1,405억원 정도의 감세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 금번 세법개정안은 이런 상충된 조세정책 환경 아래에서 나온 교육지책의 결과로 판단된다.

다음, 2019년 세법개정안에서는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①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②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③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제

1) 2000년 이전은 2010년 기준년의 경제성장률이다.

시하였다. 문재인정부의 지난 2년 간 세법개정안을 보면, 소득분배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금번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기본방향의 전환은 작금의 악화된 거시경제 여건을 반영한 결과로 본다.

이런 정책기조의 변화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분야별 자원배분 계획에서도 관찰된다. 작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5년 연평균 지출증가가 가장 빠른 분야가 보건·복지·고용(18~22 연평균 10.3%)분야였다. 반면 올해의 경우에는 산업·중소기업·에너지(19~23 연평균 12.4%)와 R&D(19~23 연평균 10.8%)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보건·복지·고용(19~23 연평균 9.2%) 분야의 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계획되었다.

다만, 현재 제시된 세법개정의 내용이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이라는 중점 기본 방향에 충분할 정도로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예를 들면, 2019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및 투자촉진 분야의 조세지출의 전체 조세지출 대비 비중은 2018년 10.9%에서 2020년 7.9%로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혁신성장의 핵심 주체인 대기업에 대한 유인을 축소할 결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에게 허용된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의 경우 2018년 3%였으나, 2019년 1% 및 2020년 2%로 하향되었다. 성장동력이 크게 위축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여력과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기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세제 유인을 제공하는 등 과감한 투자촉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에서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세제 등 과감한 지원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제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기업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한시적(1년이 아닌 2~3년 정도) 세제지원 방안을 신중하지만 조속히 확정·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투자유인을 통하여 기업이윤이 확대된다면 경기부양 효과뿐만 아니라 세수측면에서도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법개정 상세내용 등에 관한 의견이다. 눈에 띄는 개정안은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²⁾과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개정안이다. 이 두 주제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할 정도로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이 두 가지 사안 모두 기업의 경영권을 후속 세대로 넘길 때 경영권 유지와 관련되어 있다. ‘부의 되물림’은 공정성 차원에서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2) 최대주주 할증율이 경우 중소기업은 없어지고 대기업은 소유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율이 30%에서 20%로 낮아졌다.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일부 완화라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만, 상속세 차원에서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본다.

한편 주류의 과세체계 개편도 주목할 만하다. 주정 외 주류 중 맥주·탁주는 종가세에서 물가연동형 종량세로 과세체계가 개정될 예정이다. 다만, 소주와 약주·청주·과실주는 여전히 종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나머지 주류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번 세법개정안은 세입기반을 넓히고 비효율적 비과세감면을 줄이려는 노력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면이 있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이 2017년 귀속 40.8%에 달하여 약 700만명이 넘고 있음에도 이를 줄이는 조치는 없고 단지 고소득자들의 근로소득공제 한도만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소득공제도 폐지하겠다는 운만 띄운 뒤 연장됐다. 한편,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상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면세 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20년 2.4조원)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20년 2.3조원)는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그 규모를 줄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판단된다.

MEMO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MEMO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 content.

발간일 2019년 10월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예산정책처, 2019

nabo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위원회별 통계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업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